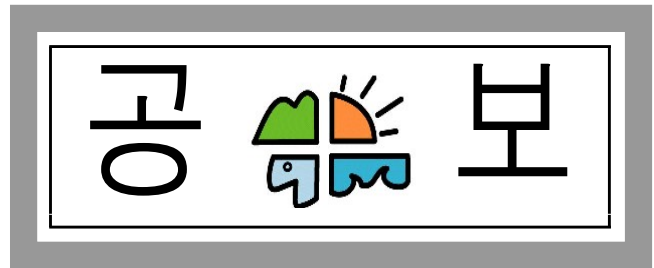


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 람	기 관 의 장



제1248호 2020년 2월 21일(금)

공 고

- 속초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공고 2
- 2020년 상수도 개인급수공사 재개 공고 8

입법예고

- 속초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9

속초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공고

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「장기 미집행 도시·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매뉴얼(국토교통부, 2015.1)」이 정하는 바에 따라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02월 21일

속 초 시 장

1. 단계별집행계획 총괄표

(단위 : 개소, 천㎡, 백만원)

구분		단계별집행계획																	
		총계			1단계 (2019년)			2-1단계 (2020년)			2-2단계 (2021년)			2-3단계 (2022년)			3단계 (2023년 이후)		
					시설수	면적	사업비	시설수	면적	사업비	시설수	면적	사업비	시설수	면적	사업비	시설수	면적	사업비
합계		102	1,120	80,573	7	10	3,914	14	26	4,959	6	14	1,927	13	26	3,965	62	1,041	65,808
교통 시설	소계	93	162	21,304	7	10	3,914	14	26	4,959	6	14	1,927	13	26	3,965	53	83	6,539
	도로	93	162	21,304	7	10	3,914	14	26	4,959	6	14	1,927	13	26	3,965	53	83	6,539
공간 시설	소계	7	914	56,974	-	-	-	-	-	-	-	-	-	-	-	-	7	914	56,974
	광장	1	1	761	-	-	-	-	-	-	-	-	-	-	-	-	1	1	761
	공원	5	346	27,540	-	-	-	-	-	-	-	-	-	-	-	-	5	346	27,540
	유원지	1	567	28,673	-	-	-	-	-	-	-	-	-	-	-	-	1	567	28,673
공공 문화 체육 시설	소계	2	44	2,295	-	-	-	-	-	-	-	-	-	-	-	-	2	44	2,295
	학교	1	32	-	-	-	-	-	-	-	-	-	-	-	-	-	1	32	-
	운동장	1	12	2,295	-	-	-	-	-	-	-	-	-	-	-	-	1	12	2,295

2. 단계별 집행계획 세부내역

(단위:백만원)

사업 시설 부문	우 선 순 위	사업개요					계획기간중사업비										단계별사업비(재정적집행가능시설)					실 효 시 기
		사업명	사업 기간	기타 주요 내용	총 사업비	총계	재정적						비재정적		1단계	2-1단계	2-2단계	2-3단계	3단계			
							국비	지방비			지방채	공기업	민간 투자	공공 기여								
								계	도비	시비												
도로	1	소로 1 75	'19	미개설구간	638	638	-	-	-	-	638	-	-	-	638	-	-	-	-	-	2020	
도로	2	소로 1 14	'19	미개설구간	361	361	-	-	-	-	361	-	-	-	361	-	-	-	-	-	2020	
도로	3	중로 1 24	'19	미개설구간	1,030	1,030	-	-	-	-	1,030	-	-	-	1,030	-	-	-	-	-	2020	
도로	4	소로 2 27	'19	미개설구간	469	469	-	-	-	-	469	-	-	-	469	-	-	-	-	-	2020	
도로	5	소로 3 70	'19	미개설구간	53	53	-	-	-	-	53	-	-	-	53	-	-	-	-	-	2020	
도로	6	소로 1 22	'19	미개설구간	837	837	-	-	-	-	837	-	-	-	837	-	-	-	-	-	2020	
도로	7	소로 3 89	'19	전체구간	526	526	-	-	-	-	526	-	-	-	526	-	-	-	-	-	2020	
도로	8	소로 3 132	'20	미개설구간	207	207	-	-	-	-	207	-	-	-	-	207	-	-	-	-	2020	
도로	9	소로 3 154	'20	전체구간	312	312	-	-	-	-	312	-	-	-	-	312	-	-	-	-	2020	
도로	10	소로 2 97	'20	전체구간	454	454	-	-	-	-	454	-	-	-	-	454	-	-	-	-	2020	
도로	11	소로 3 134	'20	전체구간	159	159	-	-	-	-	159	-	-	-	-	159	-	-	-	-	2020	
도로	12	소로 1 16	'20	전체구간	1,182	1,182	-	-	-	-	1,182	-	-	-	-	1,182	-	-	-	-	2020	
도로	13	중로 3 1	'20	미개설구간	9	9	-	-	-	-	9	-	-	-	-	9	-	-	-	-	2020	
도로	14	소로 2 28	'20	미개설구간	20	20	-	-	-	-	20	-	-	-	-	20	-	-	-	-	2020	
도로	15	소로 3 82	'20	전체구간	372	372	-	-	-	-	372	-	-	-	-	372	-	-	-	-	2020	
도로	16	중로 3 60	'20	전체구간	885	885	-	-	-	-	885	-	-	-	-	885	-	-	-	-	2020	
도로	17	소로 1 13	'20	미개설구간	-	-	-	-	-	-	-	-	-	-	-	-	-	-	-	-	2020	
도로	18	중로 3 13	'20	미개설구간	1,201	1,201	-	-	-	-	1,201	-	-	-	-	1,201	-	-	-	-	2020	
도로	19	소로 2 94	'20	미개설구간	119	119	-	-	-	-	119	-	-	-	-	119	-	-	-	-	2020	
도로	20	소로 2 75	'20	전체구간	39	39	-	-	-	-	39	-	-	-	-	39	-	-	-	-	2020	
도로	21	중로 3 19	'20	미개설구간	-	-	-	-	-	-	-	-	-	-	-	-	-	-	-	-	2020	
도로	22	소로 2 176	'21	전체구간	878	878	-	-	-	-	878	-	-	-	-	-	878	-	-	-	2020	
도로	23	소로 2 101	'21	미개설구간	-	-	-	-	-	-	-	-	-	-	-	-	-	-	-	-	2020	
도로	24	소로 2 84	'21	전체구간	176	176	-	-	-	-	176	-	-	-	-	-	176	-	-	-	2020	
도로	25	소로 3 107	'21	전체구간	458	458	-	-	-	-	458	-	-	-	-	-	458	-	-	-	2020	

(단위:백만원)

사업 시설 부분	우 선 순 위	사업개요					계획기간중사업비										단계별사업비(재정적집행가능시설)					실 효 시 기
		사업명	사업 기간	기타 주요 내용	총 사업비	집행방식별사업비										1단계	2-1단계	2-2단계	2-3단계	3단계		
						총계	재정적					비재정적										
							국비	지방비			지방채	공기업	민간 투자	공공 기여								
								계	도비	시비					2019	2020	2021	2022	2023 이후			
도로	26	소로 2 31	'21	미개설구간	87	87	-	-	-	-	87	-	-	-	-	-	87	-	-	2020		
도로	27	소로 1 49	'21	미개설구간	328	328	-	-	-	-	328	-	-	-	-	-	328	-	-	2020		
도로	28	중로 3 35	'22	미개설구간	653	653	-	-	-	-	653	-	-	-	-	-	-	653	-	2021		
도로	29	중로 1 18	'22	전체구간	1,829	1,829	-	-	-	-	1,829	-	-	-	-	-	-	1,829	-	2023		
도로	30	소로 3 162	'22	미개설구간	-	-	-	-	-	-	-	-	-	-	-	-	-	-	-	2020		
도로	31	소로 2 85	'22	미개설구간	65	65	-	-	-	-	65	-	-	-	-	-	-	65	-	2020		
도로	32	소로 3 33	'22	미개설구간	172	172	-	-	-	-	172	-	-	-	-	-	-	172	-	2020		
도로	33	소로 2 47	'22	미개설구간	103	103	-	-	-	-	103	-	-	-	-	-	-	103	-	2020		
도로	34	소로 3 129	'22	미개설구간	-	-	-	-	-	-	-	-	-	-	-	-	-	-	-	2020		
도로	35	소로 3 47	'22	미개설구간	-	-	-	-	-	-	-	-	-	-	-	-	-	-	-	2020		
도로	36	소로 3 97	'22	미개설구간	-	-	-	-	-	-	-	-	-	-	-	-	-	-	-	2020		
도로	37	소로 2 29	'22	미개설구간	30	30	-	-	-	-	30	-	-	-	-	-	-	30	-	2020		
도로	38	소로 2 45	'22	미개설구간	-	-	-	-	-	-	-	-	-	-	-	-	-	-	-	2020		
도로	39	소로 2 26	'22	미개설구간	351	351	-	-	-	-	351	-	-	-	-	-	-	351	-	2020		
도로	40	중로 2 21	'22	미개설구간	762	762	-	-	-	-	762	-	-	-	-	-	-	762	-	2020		
도로	41	중로 1 31	'23	미개설구간	4,000	4,000	-	-	-	-	4,000	-	-	-	-	-	-	-	4,000	2020		
도로	42	소로 3 147	'23	미개설구간	630	630	-	-	-	-	-	-	630	-	-	-	-	-	630	2020		
도로	43	중로 3 33	'23	미개설구간	699	699	-	-	-	-	-	-	699	-	-	-	-	-	699	2020		
도로	44	소로 3 27	'23	전체구간	219	219	-	-	-	-	-	-	219	-	-	-	-	-	219	2020		
도로	45	소로 3 109	'23	전체구간	89	89	-	-	-	-	89	-	-	-	-	-	-	-	89	2020		
도로	46	소로 3 143	'23	미개설구간	126	126	-	-	-	-	-	-	126	-	-	-	-	-	126	2020		
도로	47	소로 3 145	'23	미개설구간	83	83	-	-	-	-	-	-	83	-	-	-	-	-	83	2020		
도로	48	소로 2 87	'23	미개설구간	-	-	-	-	-	-	-	-	-	-	-	-	-	-	-	2020		
도로	49	소로 1 9	'23	미개설구간	275	275	-	-	-	-	275	-	-	-	-	-	-	-	275	2020		
도로	50	소로 3 273	'23	미개설구간	3	3	-	-	-	-	3	-	-	-	-	-	-	-	3	2020		
도로	51	소로 2 175	'23	미개설구간	-	-	-	-	-	-	-	-	-	-	-	-	-	-	-	2020		

(단위:백만원)

사업 시설 부분	우 선 순 위	사업개요					계획기간중사업비										단계별사업비(재정적집행가능시설)					실 효 시 기
		사업명	사업 기간	기타 주요 내용	총 사업비	집행방식별사업비										1단계	2-1단계	2-2단계	2-3단계	3단계		
						총계	재정적					비재정적										
							국비	지방비			지방채	공기업	민간 투자	공공 기여	2019						2020	
도로	52	중로 3 59	'23	전체구간	1,466	1,466	-	-	-	-	-	-	1,466	-	-	-	-	-	1,466	2020		
도로	53	소로 3 135	'23	미개설구간	263	263	-	-	-	-	-	-	263	-	-	-	-	-	263	2020		
도로	54	소로 3 140	'23	미개설구간	260	260	-	-	-	-	-	-	260	-	-	-	-	-	260	2020		
도로	55	소로 3 26	'23	전체구간	457	457	-	-	-	-	-	-	457	-	-	-	-	-	457	2020		
도로	56	소로 3 95	'23	전체구간	232	232	-	-	-	-	232	-	-	-	-	-	-	-	232	2020		
도로	57	소로 2 108	'23	전체구간	120	120	-	-	-	-	120	-	-	-	-	-	-	-	120	2020		
도로	58	소로 2 177	'23	전체구간	33	33	-	-	-	-	33	-	-	-	-	-	-	-	33	2020		
도로	59	소로 2 57	'23	미개설구간	59	59	-	-	-	-	-	-	59	-	-	-	-	-	59	2020		
도로	60	소로 2 58	'23	미개설구간	19	19	-	-	-	-	-	-	19	-	-	-	-	-	19	2020		
도로	61	소로 3 115	'23	전체구간	148	148	-	-	-	-	148	-	-	-	-	-	-	-	148	2020		
도로	62	소로 3 171	'23	미개설구간	32	32	-	-	-	-	32	-	-	-	-	-	-	-	32	2020		
도로	63	소로 3 24	'23	전체구간	42	42	-	-	-	-	-	-	42	-	-	-	-	-	42	2020		
도로	64	소로 3 25	'23	전체구간	347	347	-	-	-	-	-	-	347	-	-	-	-	-	347	2020		
도로	65	소로 3 78	'23	전체구간	308	308	-	-	-	-	308	-	-	-	-	-	-	-	308	2020		
도로	66	소로 3 81	'23	전체구간	124	124	-	-	-	-	124	-	-	-	-	-	-	-	124	2020		
도로	67	소로 2 178	'23	전체구간	63	63	-	-	-	-	63	-	-	-	-	-	-	-	63	2020		
도로	68	소로 3 144	'23	미개설구간	456	456	-	-	-	-	-	-	456	-	-	-	-	-	456	2020		
도로	69	소로 3 151	'23	미개설구간	-	-	-	-	-	-	-	-	-	-	-	-	-	-	-	2020		
도로	70	소로 3 165	'23	미개설구간	90	90	-	-	-	-	90	-	-	-	-	-	-	-	90	2020		
도로	71	소로 2 11	'23	전체구간	100	100	-	-	-	-	100	-	-	-	-	-	-	-	100	2020		
도로	72	소로 3 114	'23	미개설구간	140	140	-	-	-	-	140	-	-	-	-	-	-	-	140	2020		
도로	73	소로 3 242	'23	미개설구간	143	143	-	-	-	-	143	-	-	-	-	-	-	-	143	2020		
도로	74	소로 3 94	'23	미개설구간	86	86	-	-	-	-	86	-	-	-	-	-	-	-	86	2020		
도로	75	소로 2 55	'23	미개설구간	88	88	-	-	-	-	-	-	88	-	-	-	-	-	88	2020		
도로	76	소로 1 66	'23	전체구간	-	-	-	-	-	-	-	-	-	-	-	-	-	-	-	2020		
도로	77	중로 1 19	'23	미개설구간	1,053	1,053	-	-	-	-	-	-	1,053	-	-	-	-	-	1,053	2023		

(단위:백만원)

사업 시설 부분	우선 순위	사업개요				계획기간중사업비										단계별사업비(재정적집행가능시설)					실 효 시기
		사업명	사업 기간	기타 주요 내용	총 사업비	집행방식별사업비															
						총계	재정적					비재정적		1단계	2-1단계	2-2단계	2-3단계	3단계			
							국비	지방비			지방채	공기업	민간 투자						공공 기여		
계	도비	시비	2019	2020	2021	2022	2023 이후														
도로	78				26	26	-	-	-	-	26	-	-	-	-	-	-	-	-	26	2020
도로	79	소로 3 51	'23	미개설구간	-	-	-	-	-	-	-	-	-	-	-	-	-	-	-	-	2020
도로	80	소로 2 213	'23	미개설구간	1,723	1,723	-	-	-	-	-	-	1,723	-	-	-	-	-	-	1,723	2025
도로	81	소로 2 54	'23	미개설구간	86	86	-	-	-	-	-	-	86	-	-	-	-	-	-	86	2020
도로	82	소로 2 71	'23	미개설구간	487	487	-	-	-	-	-	-	487	-	-	-	-	-	-	487	2020
도로	83	중로 3 17	'23	미개설구간	-	-	-	-	-	-	-	-	-	-	-	-	-	-	-	-	2020
도로	84	중로 2 2	'23	미개설구간	-	-	-	-	-	-	-	-	-	-	-	-	-	-	-	-	2020
도로	85	소로 2 212	'23	전체구간	76	76	-	-	-	-	76	-	-	-	-	-	-	-	-	76	2024
도로	86	중로 1 26	'23	미개설구간	5,459	5,459	-	-	-	-	-	-	5,459	-	-	-	-	-	-	5,459	2020
도로	87	소로 3 284	'23	전체구간	30	30	-	-	-	-	30	-	-	-	-	-	-	-	-	30	2024
도로	88	소로 3 285	'23	전체구간	55	55	-	-	-	-	55	-	-	-	-	-	-	-	-	55	2024
도로	89	소로 3 286	'23	전체구간	113	113	-	-	-	-	113	-	-	-	-	-	-	-	-	113	2024
도로	90	소로 3 288	'23	전체구간	105	105	-	-	-	-	105	-	-	-	-	-	-	-	-	105	2024
도로	91	소로 2 205	'23	전체구간	25	25	-	-	-	-	25	-	-	-	-	-	-	-	-	25	2020
도로	92	소로 3 128	'23	전체구간	40	40	-	-	-	-	40	-	-	-	-	-	-	-	-	40	2020
도로	93	중로 3 34	'23	미개설구간	-	-	-	-	-	-	-	-	-	-	-	-	-	-	-	-	2020
광장	94	교통광장4	'23		761	761	-	-	-	-	761	-	-	-	-	-	-	-	-	-	2020
공원	95		'23		95	95	-	-	-	-	95	-	-	-	-	-	-	-	-	-	2020
공원	96		'23		4,313	4,313	-	-	-	-	4313	-	-	-	-	-	-	-	-	-	2020
공원	97		'23		28,424	28,424	-	-	-	-		-	28,424	-	-	-	-	-	-	-	2020
공원	98		'23		10,404	10,404	-	-	-	-	10,404	-	-	-	-	-	-	-	-	-	2020
공원	99		'23		12,728	12,728	-	-	-	-	12,728	-	-	-	-	-	-	-	-	-	2020
유원지	100	유원지1	'23		48,673	48,673	-	-	-	-	28,673	-	20,000	-	-	-	-	-	-	-	2020
학교	101	중학교9	'23		3,449	3,449	3,449	-	-	-		-	-	-	-	-	-	-	-	-	2021
운동장	102	운동장1	'23		2,295	2,295	-	-	-	-	2,295	-	-	-	-	-	-	-	-	-	2024

3. 관계 도서 비치 및 기타사항 문의처 : 속초시 건설도시과 (033-639-3767)

2020년 상수도 개인급수공사 재개 공고

동절기 기온강하로 인한 부설시공 방지 및 급수설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일시중지한 상수도 개인급수공사를 2020년 해빙기 도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개하고자 공고합니다.

2020년 2월 21일

속 초 시 장

1. 재개일자 : 2020. 3. 2. ~ 동절기 별도 공고시 까지
2. 내 용 : 상수도 개인급수공사 신청 접수 및 시공
3. 사 유 : 해빙기 도래에 따른 급수공사 재개
4. 문 의 처 : 속초시상수도사업소(☎ 033-639-2532)

속초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속초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」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0년 2월 20일

속 초 시 장

1. 자치법규명 : 속초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개정이유

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 협조 요청에 따라 소극 행정 및 주민 불편을 유발하고 주민 권익에 침해가 되는 조항 개정과 강원도 타 시·군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1건의 점용료 최소한도 금액을 2,000원 이상으로 함(안 제2조제1항)

나. 점용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당해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,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징수함.(안 제4조제2항)

다. 이미 납부한 점용료 일지라도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납부된 점용료를 반환함.(안 제6조)

4. 자치법규안 : 붙임

5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. 3. 12.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(참조 : 건설도시과)에게 제출하

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, 직접방문등

1) 전자우편(이메일) : TJ840509@korea.kr

2) 주소 :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건설도시과(지역개발팀) / 우) 24826

3) 연락처 및 팩스 : 033-639-2490(fax 033-639-2485)

라.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건설도시과 지역개발팀(033-639-2490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속초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속초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에 “다만, 1건의 점용료 등이 2,000원 미만일 때 그 금액을 없는 것으로 본다.”의 단서조항을 추가한다.

제4조제1항제2호 중 “60일이 경과되기 전에”를 “3개월 이내에”로 한다.

제6조 중 “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. 소하천정비법 제17조 제1항제3호 및 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.”를 “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라 점용·사용허가 사항에 대해 그 허가가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부한다.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점용료등의 산정기준)① 점용료등은 【별표1】 , 【별표2】 등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.	제2조(점용료등의 산정기준)①----- ----- ----- . 다만, 1건의 점용료 등이 2,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.
② ~ ⑥ (생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
제4조(점용료등의 징수시기)①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.	제4조(점용료등의 징수시기)①----- ----- 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점용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당해연도분은 허가를 할때에,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 후 60일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.	2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3개월 이내에 ----- 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6조(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) <u>이미 납부한 점용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소하천정비법 제1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.</u>	제6조(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) <u>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라 점용·사용허가 사항에 대해 그 허가가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부한다.</u>

관 계 법 령 발 취

□ 소하천정비법

제22조(점용료 등의 징수) ① 관리청은 제14조에 따른 소하천등(소하천 예정지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점용·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, 토지·모래·자갈 등 소하천등 산출물의 채취료 등(이하“점용료 등”이라 한다)을 징수할 수 있다. 다만, 점용 또는 사용 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관리청은 제1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로부터 그 점용료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. 다만, 점용 또는 사용 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점용·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.

④ 관리청은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점용·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등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1. 공용·공공용 사업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
2.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인 경우
3.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

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등, 변상금 및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며, 그 금액과 징수방법 및 제4조항에 따른 점용료등과 수수료의 감면 비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